

계약분리특약 약관 목차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제 3 조 특약의 적용
- 제 4 조 계약분리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 제 5 조 계약분리 이후의 효력
- 제 6 조 계약분리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 7 조 원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계약분리특약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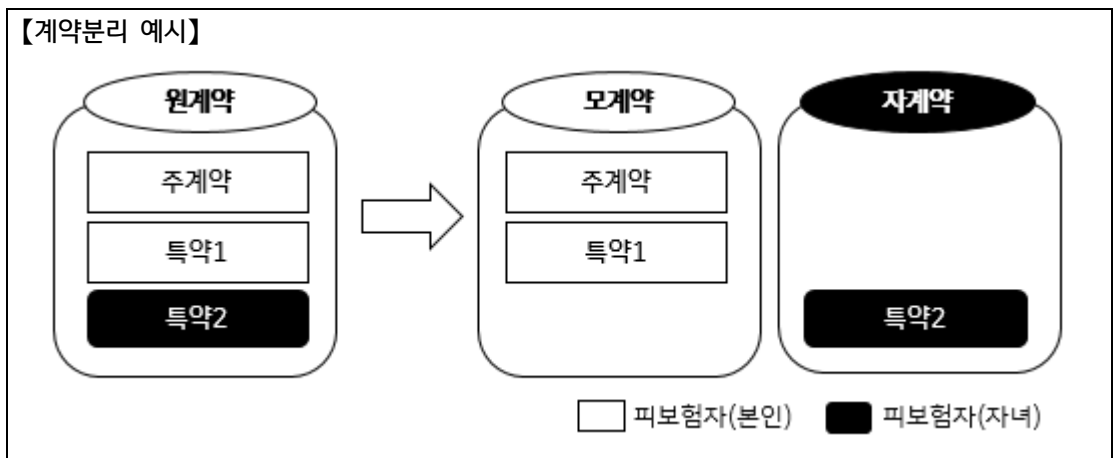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제 3 조 [특약의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5. 원(原)계약: 계약분리의 대상이 되는 계약으로 2 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가입되어 있는 유효한 계약 (단, 원계약의 주계약이 2 인(3 인, 多人)보장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주계약의 주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유효한 특약이 부가되어 있어야 함.)
6. 자(子)계약: 원계약에서 분리되는 피보험자(자녀)를 보장하는 계약
7. 모(母)계약: 원계약에서 자계약이 분리되고 난 이후 원계약에 남아 있는 주계약 및 부가 특약으로 이루어진 계약
8. 계약분리: 원계약을 모계약과 자계약으로 분리하는 것



제 3 조 [특약의 적용]

- (1) 이 특약은 제 1 조 [용어의 정의] 제 5 호에서 정한 원계약을 계약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해 적용합니다.
- (2) 계약분리 이후 모계약과 자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제 1 항에 따른 계약분리 신청 시 서면으로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분리는 분리의 대상이 되는 자계약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원계약으로부터 분리하고, 그 이외의 남은 부분은 모계약에 남겨지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후 모계약과 자계약의 책임준비금은 각각 적립됩니다.

제 4 조 [계약분리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 (1) 원계약 최초계약일로부터 2 년이 지난 이후 계약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분리 후의 자계약에 해당하는 특약을 원계약의 최초계약일 이후 부가한 경우, 그 특약의 부가일로부터 2 년이 지난 이후 계약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계약분리 신청 시 원계약의 피보험자(자녀 포함)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계약분리 신청 시 및 계약자보관용 계약분리 신청서를 발급하여 드리며, 계약분리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분리를 승낙하는 경우 회사는 자계약의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4)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 및 제 3 조[특약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이 특약에 따라 계약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1. 원계약이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고 있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고(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지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원계약에서 분리되는 자계약의 해당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 발생 후 해당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3. 원계약에 대하여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계약분리 후의 모계약과 자계약의 계약 내용이 원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제 5 조 [계약분리 이후의 효력]

- (1) 계약분리 이후 모계약과 자계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보장내용(납입면제 포함)은 원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2) 계약분리 후 모계약과 자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분리 후에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3) 계약분리 이후 원계약에서 자계약의 피보험자에게 해당하는 보장 내용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4) 계약분리 이후 모계약 및 자계약은 원계약으로의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제 6 조 [계약분리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분리 이후 모계약 및 자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각각 적용하며, 각각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원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